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승계요건 완화되다

구본승 구의원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건의문 반영돼!

구본승 강북구의원(무소속/미아, 송중, 번3동)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 23일, 제 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에 반영되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강북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L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의3호에 따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지 아니한 세대주 이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의안이 반영되어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일인 2013년 7월 29일 이후에 월평균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속인에게도 계약자 명의변경이 허용되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입주권 승계요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이 퇴거당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세대주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강북일보 5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승계요건 완화 실현

구본승 의원 대표발의한 건의문 반영돼 '명의변경 허용' 성과거둬

구본승 강북구의원(무소속, 미아·송중·번3동)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 23일, 제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에 반영되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강북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L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의3호에 따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동일



구본승 의원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

이러한 건의안이 반영되어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3년 7월 29일 이후에 월평균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상속인에게도 계약자 명의변경이 허용됐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입주권 승계요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이 퇴거당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세대주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본승 구의원 대표발의한 건의문 반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승계요건 완화



구본승 강북구의원(무소속/미아, 송중, 번3동)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 23일, 제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승계요건 완화 건의안』에 따라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강북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LH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세대주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7의3호에 따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의안이 반영되어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3년 7월 29일 이후에 월평균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자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었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임주권 승계요건이 완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이 퇴거당하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세대주가 사망하여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